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



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2011고합25,74(병합)]

【전문】

【피고인】

【검 사】이원곤외 2인(기소, 공판), 박세현외 5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 외 6인

【주문】

1

- 1. 피고인 1을 판시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3, 4, 5, 7, 9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1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3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11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16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14, 15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피고인 1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700,000원을, 피고인 2,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20,000원을, 피고인 16, 14, 1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7, 9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피고인 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5. 피고인 8, 10은 각 무죄.
-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가. 피고인 1, 2, 3에 대한 한화그룹 계열사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 나.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소외 19 회사 유상증자 대금 출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소외 1 회사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라. 피고인 1, 2, 3, 7에 대한 공소외 17 회사의 군산시 금암동 소재 부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마. 피고인 1, 2, 9에 대한 공소외 27 회사 주식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바. 피고인 1, 2에 대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2파트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각 업무상횡령의 점,

- 사. 피고인 2, 5, 6에 대한 ○○농장 임차보증금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 아. 피고인 2에 대한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 자. 피고인 2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30 회사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이유]

]

[이유]]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